

제283회 정례회
성 북 구 의 회

의안
번호 제35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 병 곤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 359 호
- 제 출 자 : 김세운 의원 외 12명
- 제 출 일 : 2021. 5. 27.
- 회 부 일 : 2021. 5. 28.

2. 제안이유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의거하여 조례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내용 중 출원보상 규정을 신설하고 등록보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신설

- 조례에서 사용하는 “특허 등”의 용어 정의 (안 제2조제4호)
- 출원보상금 지급 규정 (안 제10조의2)
- 위원회의 제적·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안 제21조의2)
- 위원회의 해촉 규정 (안 제21조의3)
-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출원의 취하와 권리의 포기 등 규정 (안 제23조제2항)

나. 내용 보완

- “특허 등” 등록보상금 상향 조정 (안 제15조)
-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조정(10명→9명)하고 위원의 구성방법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21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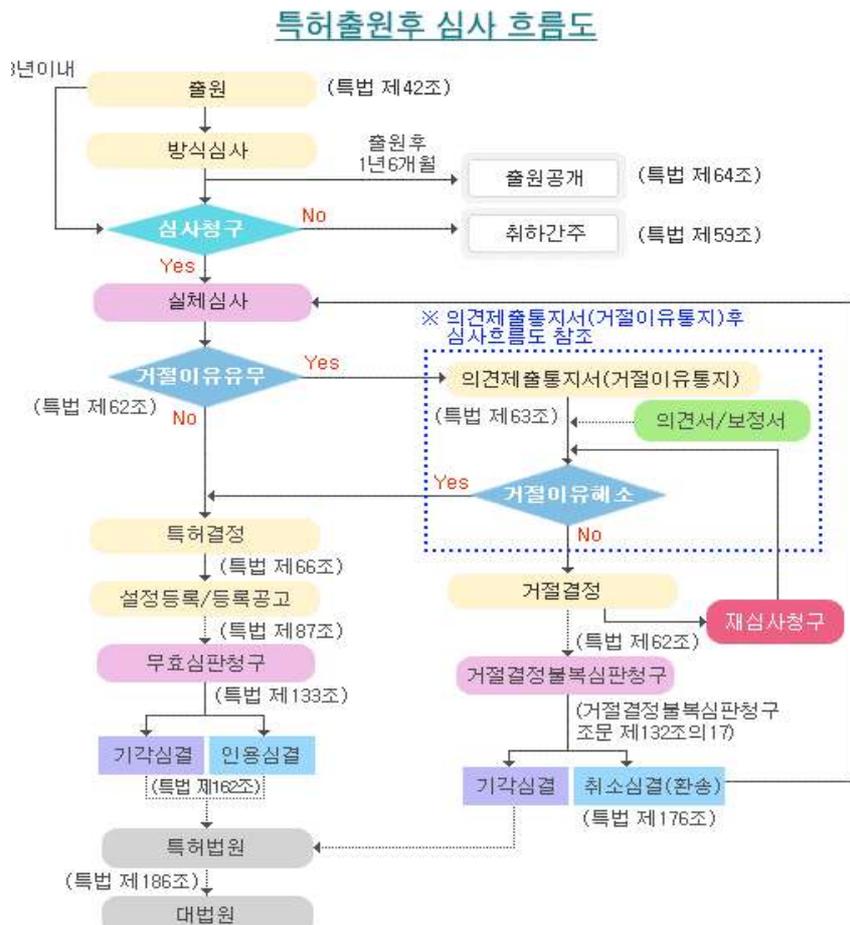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편성

다. 입법예고 : 2021. 5. 28. ~ 2021. 6. 4.

라. “특허 등”의 등록 절차



5. 검토의견

「발명진흥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금번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한 직무발명의 과정에서 출원 시에 출원보상을 신설하고 “특허 등”의 등록 시에 지급하는 등록보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으로 성북구 공무원이 직무발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까.

관련법령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